

제299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(이병도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병 도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
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
드리겠습니다.

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단순 산업구조에서 복잡하고
다차원적인 산업구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.

산업구조의 변화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,
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노동환경 역시 여러 갈래로
나뉘고 있습니다.

노동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필수노동자, 플랫폼노동자,
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

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.

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들을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로 포괄하여 현재는 물론,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익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